

한뜰마을 4단지 |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안내문

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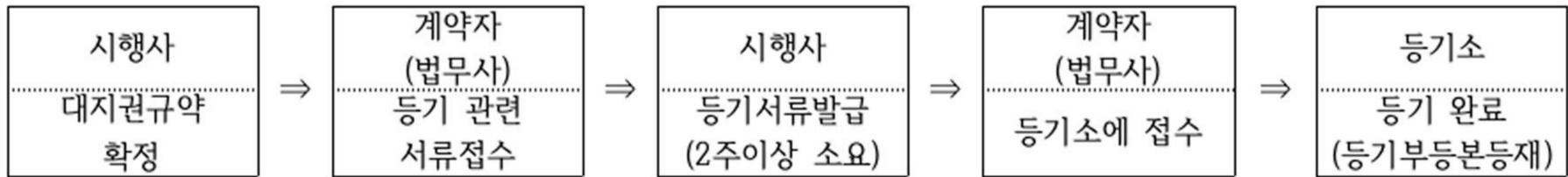
고객님께서 입주하고 계신 “한뜰마을4단지”의 토지준공에 따른 지적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세대별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, 안내문을 숙지하시어 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아파트(근린생활시설) 세입자(임차인)께서는 반드시 소유자에게 연락하시어 관련 안내를 전달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.

■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

▷ 등기신청기간 : 2024.06.24.(월) ~ 2024.08.30.(금)

■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절차



1) 당사에서는 법무사를 지정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선임한 법무사 또는 개인이 직접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.

▶ 법무사를 선정하신 후, 해당 법무사 사무실로 등기서류를 접수하시면 등기업무 일체를 대행하여 진행합니다.

※ 관련 서류 접수 장소는 하단에 기재

▶ 개인이 직접 이전등기시 상세작성 방법은 당사에서 별도 안내하지 않으므로 법무사, 등기소 등에 개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
기 발급된 위임장의 기재사항 변경 및 분실에 따른 재발급 요청시, 추가서류(사유서 등) 징구 및 재발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오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.

2)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절차

1 단계	법무사 신청(접수) / 직접(셀프)등기 계약자 → 한신공영 마케팅부로 송부
[준비서류] ① 위임장 1부(첨부서류(위임장) 참고) ② 주민등록초본 1부 (주소 변동사항 기재 - 1개월 이내 발급) ③ 집합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1부 (1개월 이내 발급) ④ 신분증 사본(연락처 기재)	

※ 대지권 비율은 첨부된 대지권규약을 필히 참고하시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 단계	당사에서 서류 수령 후 법무사 및 계약자(셀프등기 시)로 송부
[시행사 발급서류] ① (법인인감 날인) 위임장 ② 인감증명서 ③ 대지권규약 ④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※ 접수 후 약 3주 이상 소요(다량 신청에 따른 일괄 검수)	

3 단계	<p>등기소에 직접 등기 신청(시행사 발급서류 및 등기소 필요서류)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☎1544-0773</p>
<p>① 시행사 발급서류 지참 (위임장, 인감증명서, 대지권규약, 등기필정보) ② 등기소에 필요서류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(취득세 영수증 사본, 채권 영수증 사본, 주민등록초본, 등기부 등본, 신분증 사본 등)</p>	

■ 접수 및 서류발급 - 법무사 등기 및 셀프 등기 동일

<p>[접수] ▷ 한신공영 마케팅부 등기 접수/발송 ☎02-3393-3320 [주소 : (06520) 서울 서초구 잠원로94, 한신공영 4층] ※ 준비된 서류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접수 여부 확인(등기번호)을 위함)</p> <p>[서류발급] ▷ 서류 발급 이후 등기발송 ※ 받을 주소가 계약서상 주소와 상이할 경우 메모하여 요청해주시면 받을 주소로 송부하여 드립니다.</p>

■ 기타사항

- 1) 등기 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본인의 책임이므로 등기 신청 시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2)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는 시행사(한신공영)의 (법인으로 날인된) 위임장,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다소 시일(3주 가량)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3) 기타문의 사항 :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☎1544-0773
 한신공영 마케팅부 ☎02-3393-3320
 아파트 관리사무소 ☎044-868-8723
 상가 관리사무소 ☎044-868-4565